(2024)물류관리사 단기완성 2교시 물류관련법규

<법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>

2024년 1월 10일 발행

페이지	수정 전	수정 후
물류관련법규 13	(2)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(법 제18조) ① ~ ② ~ ③ ~ ④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	(2)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(법 제18조,19조의2) ① ~ ② ~ ③ ~ ④ 삭제(2024.01.09.)→신설 규정(2024.07.10. 시행)으로 대체 ④ 전문위원회 :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녹색물류전문위원회, 생활물류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 **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(전문위원회) ① 전문위원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조사·연구·검토한다.

		1. 녹색물류전문위원회: 다음의 사항 .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사항 .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환경친화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사항 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조사·연구·검토를 요청한 사항 2. 생활물류전문위원회: 다음의 사항 .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·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사항 .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. 다른 법령에서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 사항 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조사·연구·검토를 요청한 사항 **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** **③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** 1. 녹색물류전문위원회: 제4항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1)의 위원 2. 생활물류전문위원회: 제4항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1)의 위원 **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.** 1. 녹색물류전문위원회: 다음의 사람 가.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1명 나.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) 산업통상자원부 및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물류, 에너지 또는 자동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

		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) 물류, 에너지 또는 자동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물류, 에너지 또는 자동차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2. 생활물류전문위원회: 다음 각 목의 사람 가.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1명 나.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) 고용노동부, 공정거래위원회 및 우정사업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)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**⑤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** **⑥ 각 전문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.**
물류관련법규 36	(4)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설치(법 제60조의2)	(4)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설치(법 제60조의2) →전체 삭제
물류관련법규 39	보조단 확인하기! ④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안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.	보조단 확인하기! ④ 삭제
물류관련법규 40	(3) 과징금의 납부 ②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·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안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.	(3) 과징금의 납부 ②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·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. (단서 규정 삭제)

물류관련법규 50	26번 문제 해설 ⑤ 국토교통부장관 →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26번 정답 ⑤	26번 문제 해설 추가 ⑤ 국토교통부장관 →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※ ② 시험 시행 당시에는 맞는 지문이나, 법 개정으로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다. 26번 정답 ②, ⑤
물류관련법규 51	29번 문제 보기 ④ 녹색물류협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⑤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	29번 문제 보기 ④, ⑤ 삭제
물류관련법규 53	35번 문제 보기 ④ ④ 과징금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·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안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.	35번 문제 보기 ④ 일부 삭제 ④ 과징금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·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. (단서 규정 삭제)
물류관련법규 64	㉣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,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	㉣ 전체 삭제
물류관련법규 69	② 실수요 검증위원회 :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시·도에 각각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둔다. ~	② 실수요 검증위원회 :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시·도에 각각 실수요검증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~ **[내용추가]**(2024. 1. 9.) ⑤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수요검증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⑥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. ⑦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.
물류관	④ 물류단지개발지침 포함사항(시행령 제15조)	④ 물류단지개발지침 포함사항(시행령 제15조)

련법규 75	5.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	5.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
물류관 련법규 78 물류관 련법규 78	② 환지대상자 :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물류단지의 지정·고시일 현재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 공급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다.	② 환지대상자 :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물류단지의 지정·고시일 현재 물류단지 안에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공급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해당 토지에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물류단지시설 또는 법령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.
	④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. 1. ~ 환지의 가액 : 해당 물류단지의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	④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. 1. ~ 환지의 가액 : 해당 물류단지의 용지별 분양 가격을 기준
물류관 련법규 80	맨 상단 박스 6. 문화재 조사비	맨 상단 박스 6. 국가유산 조사비
물류관 련법규 81	② 특별회계의 운용(법 제41조)	② 특별회계의 운용(법 제41조) (추가)7.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비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물류관 련법규 85	(4) 수의계약에 의한 토지 등의 공급 1.~6.	(4) 수의계약에 의한 토지 등의 공급 1.~6. [내용추가] 7. 유치업종배치계획에 포함된 기업에 대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업이 직접 사용할 물류시설(판매시설은 제외한다)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8.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
물류관 련법규 91	4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	4. 그 밖에 정비지구의 교통·환경 정비를 위하여 「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
물류관	19번 문제 보기	19번 문제 보기

련법규 103	②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물류단지의 지정고시일 현재 물류단지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③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를 받으려는 자는 환지신청서에 물류단지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②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물류단지의 지정고시일 현재 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③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를 받으려는 자는 환지신청서에 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물류관련법규 109	36번 문제 해설 36번 문제 정답 ①	36번 문제 해설 내용 추가 ※ ③ 시험 시행 당시에는 맞는 지문이나, 법 개정(2024.1.9., 시행 2024.7.10.)으로 '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수요검증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'로 내용이 변경되었다. 36번 문제 정답 추가 ①, ③
물류관련법규 110	37번 문제 해설 ① 시·도지사 → 시장·군수·구청장(법 제59조의4 제1항)	37번 문제 해설 ① 시·도지사 → 시장·군수·구청장(법 제59조의4 제1항), 국토교통부장관 → 시·도지사
물류관련법규 129	(1) 개념 및 유형 "체인사업"이라 함은 ~ 직영점형 체인사업, 프랜차이즈 체인사업, 임의가맹점형	(1) 개념 및 유형 "체인사업"이라 함은 ~ 직영점형 체인사업, 프랜차이즈 체인사업, 임의가맹점형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
물류관련법규 181	(1) 과징금의 부과 ③ 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.	(1) 과징금의 부과 ③ 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. (단서 규정 삭제)
물류관련법규 184	③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·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「도로법」 제77조 또는 「도로교통법」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④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는 재계약·중개 또는 대리로 보지 아니한다.	③ 운송주선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·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<신설 2024. 1. 9.> ④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·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「도로법」 제77조 또는 「도로교통법」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

	⑤ 이밖에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선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⑤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는 재계약·중개 또는 대리로 보지 아니한다. ⑥ ①~④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물류관련법규 200	(3) 보조금의 지급정지 왼쪽 보조단	(3) 보조금의 지급정지 왼쪽 보조단 내용 추가 ● 법 제44조의2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 기준(시행령 제9조의16, 2024. 05. 28. 신설) 1. 1차 위반: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. 2차 위반: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. 다만,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
물류관련법규 201	②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: ~ ③ 추가	②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: ~ ③ ②에도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고 위반행위자가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한 경우에는 지급정지 처분을 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분기준의 1/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.
물류관련법규 213	⑦ 포상금은 100만원의 범위에서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.	⑦ 포상금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.
물류관련법규 224	24번 문제 보기 ④ ④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	24번 문제 보기 ④ 수정 ④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 과징금을 내야 한다.
물류관련법규 245	(2) 과징금 처분(시행령 제10조) ②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·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	(2) 과징금 처분(시행령 제10조) ②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. (삭제)

	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	
물류관련법규 256	② 점용허가기간 (박스) 1. 철골조·철근콘크리트조·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: 30년 ㉡ 허가를 받은 철도시설의 점용허가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장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상기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	② 점용허가기간 (박스) 2. 철골조·철근콘크리트조·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: 50년 ㉡ 삭제
물류관련법규 265	15번 문제 보기 ③ ③ 철골조·철근콘크리트조·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허가기간은 30년이다. 15번 해설 15번 정답 ④	15번 문제 보기 ③ 수정 ③ 철골조·철근콘크리트조·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허가기간은 50년이다. 15번 해설 추가 ※ ① 시험 시행 당시에는 맞는 지문이나, 법 개정으로 해당 내용 삭제되었다. 15번 정답 ①, ④
물류관련법규 286	5 과징금(법 제27조의6) ④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간에 내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.	5 과징금(법 제27조의6) ④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간에 내야 한다. (단서 규정 삭제)
물류관련법규 314	③ 산지유통인 관련 규제사항 ㉡ 도매시장 개설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	③ 산지유통인 관련 규제사항 ㉡ 도매시장 개설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하여주어야 한다.
물류관련법규 330	8번 문제 보기 ②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	8번 문제 보기 ② 변경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하여 주어야 한다.

※ 책 출간 후 법이 개정되어 수정사항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

다음 인쇄 시 반영하여 출간하겠습니다.